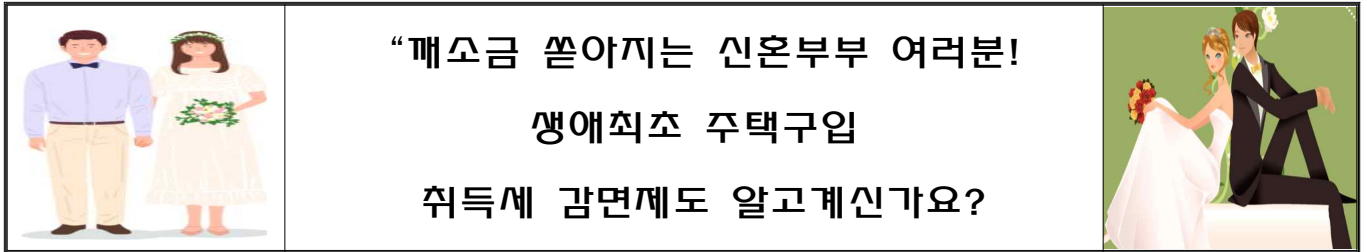


【지방세 상식 특특】 ⑰ 신혼부부 여러분 !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(50%) 혜택 놓치지 마세요~



○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저출산 극복 및 깨소금 쏟아지는 신혼부부 가구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취득세 감면(50%)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★ 하나, 감면대상 신혼부부란?

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(재혼 포함)입니다.

★ 둘, 신혼부부는 모두 다 감면대상인가요?

아닙니다. 부부합산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) 기준 맞벌이가구 7,000만원 이하, 홑벌이가구 5,000만원 이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.

★ 셋, 주택은 모두 다 감면대상인가요?

아닙니다. 주택 가격기준과 면적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요.

취득가액 기준 3억원 이하 가격기준과 전용면적 60㎡(18평)이하 면적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(무허가건물 및 오피스텔 제외)

★ 넷, 생애최초 기준은 무엇인가요?

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상속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등의 경우,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★ 다섯, 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혼부부 주택 감면 신청서(각 시군 세무부서),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실 증명원(세무서), 주민등록 등(초) 본, 혼인관계 증명서, 혼인 예정인 경우 혼인을 입증할 수 있는 결혼 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 등 매매 계약서 사본 등 주택 소유사실을 확인(행정정보이용 동의)할 수 있는 관계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.

★ 여섯,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어요~

마지막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매각·증여하거나, 혼인 예정자가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

- 이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%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신혼부부 이거나 주위에 신혼부부가 이 제도를 모를 경우, 적극 알려주셔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. ^^